조선후기 여성의 呈訴活動

김 경 숙

1. 머리말
2. 조선후기 呈訴制度와 여성 정소
3. 所志에 나타난 여성의 정소활동
 1) 文書樣式
 2) 여성 정소의 침체현상과 신분별 차이
 3) 여성 정소의 내용
4. 조선후기 여성 정소의 실제 모습
 1) 사족 부녀자의 정소
 2) 평민 부녀자의 정소
5. 맺음말

1. 머리말

조선후기는 성리학 이념에 철저한 사회로 도덕적 윤리적인 성격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특히 남녀관계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여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규제하고 정절 의식을 강조하였으며, 부계의식이 강한 종법질서의 확립으로 여성들은 제사, 재산 상속 등 가정 내에서의 권리와 의무가 상당부분 축소되었다. 때문에 조선후기 여성들은 그 이전 시기와 비교되어 사회적 지위가 상당히 약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인식에 기초하여 조선후기 여성에 대한 연구 또한 지금까지는 성리학 이념을 강조하거나 성리학적 질서 속에서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 결과 성리학 사회질서에 잘 적응하여 칭송을 받는 효부와 열녀가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았고, 이에 적응하지 못한 여성들은 시대의 희생자로 불운한 인생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그 시대의 전체상을 이해하는 데 기초적인 연구이지만, 특정 부분에만 관심이 집중된 결과 그 이면에 존재하는 다양한 편차에 대해

서는 다소 소홀시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즉, 한 시대의 사회 이념에 대한 인식이 강하였기 때문에 그 시대의 대표적인 피해자로서의 여성만이 부각되었고, 이러한 분위기는 오히려 여성에 대한 연구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조선후기 여성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과 차이성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조선후기 여성들의 삶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매우 제한적인데, 이런 측면에서 古文書는 매우 주목되는 자료이다. 특히 오늘날의 請願書 또는 訴狀에 해당하는 '所志類'[1]는 제삼자에 의하여 비춰지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소리가 그대로 담긴 문서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所志는 소송이나 관청에 청원할 일이 있을 때 사용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이에 담겨있는 여성들의 목소리는 실제생활에서 나온 그들 자신의 의사와 요구가 반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요구를 국가 기관에 제기한 공식화된 목소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소지류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작업을 통하여 조선후기 여성들의 정소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그리고 그 안에 반영되어 있는 여성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조선후기 呈訴制度와 여성 정소

오늘날에는 청원과 소송이 명확하게 구분되지만 전통사회에서는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고 모두 所志類에 속하는 동일한 문서 양식을 사용하고 있었다.[2]

---

1) 소지의 개념과 양식에 대해서는 최승희, 1989『개정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참조.

2) 조선시대 소송은 제도적으로는 오늘날의 형사에 해당하는 獄訟과 민사에 해당하는 詞訟으로 구분되지만, 실제로 詞訟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따르는 등 민사와 형사가 완전히 구분되지 않았다.(박병호, 1974『韓國法制史攷』, 法文社, 251~252면). 청원과 소송 또한 엄밀히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병호는 사송의 의미를 행정업무이면서 재판적 성격을 띤 포괄적인 개념으로 파악하고, 詞訟의 범주에 청원에 해당하는 斜給立案이나 立旨節次까지도 포함하였다(박병호, 1996『近世의 法과 法思想』, 도서출판 진원, 329~330면). 所志類는 이러한 조선시대의

때문에 소지류에는 소송뿐만 아니라 訴冤, 請願, 公證申請 등 개인이 관청에 소지를 제출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포괄하는 용어로 '呈訴'를 사용하고자 한다.[3)]

조선시대 呈訴의 대상과 방식에 대해서는 법전에 명확한 규정이 보이지 않지만,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정소하는 訴冤 절차에 대해서는 『경국대전』刑典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 억울하고 원통함을 호소하는 자는 서울은 主掌官에게 올리고 지방은 관찰사에게 올린다. 그렇게 한 뒤에도 억울함이 있으면 사헌부에 고하고 그래도 억울함이 있으면 신문고를 친다. … 타인을 몰래 사주하여 소장을 내는 자도 죄가 이와 같다. 자기 소원은 모두 聽理하되 무고한 자는 杖100 流3천리에 처한다[4)]

위의 규정에 따르면, 억울하고 원통함이 있는 사람은 '主掌官, 관찰사→사헌부→신문고(국왕)'의 3단계 절차를 거쳐 訴冤하게 하였다. 다만 소원 주체를 제한하여 陰嗾告訴 즉 다른 사람을 시켜 대신 정소하는 것은 금지하고, 身自告訴 즉 자신이 직접 정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경국대전』의 규정은 조선시대 전 기간에 걸쳐 소원 절차의 기본틀로 유지되었다.[5)]

위의 경국대전 규정에서는 여성의 訴冤에 대한 규정은 보이지 않는데, 이것이 곧 여성의 訴冤을 금지하였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冤抑者'를 남녀로 구분하지 않은 것은 양자를 모두 포함한다는 뜻이며, 여성의 訴冤은 어떠한 법적 제약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허용되어 있었다고 생각된다.

특성이 잘 드러나는 문서 형식으로 청원,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 광범위하게 사용된 문서 양식이었다.

3) 당시인들도 정소의 의미를 소송에만 국한하지 않고 단수 청원의 경우에도 사용하고 있었음을 다음의 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成宗實錄』권10, 2년 6월 26일 丁卯, "漢城府判尹李堉 左尹朴楗 右尹韓義來啓曰 "前日造家餘地 命給無家者 自此冒濫呈訴者 日至數百 其弊甚煩 請勿給"; 『明宗實錄』권10, 5년 12월 17일 丙子, "畠山殿使上官如川西堂 死於京館 臨死 使其姪善七 受其官職 每歲來拜其墳 旣死 副官橘康廣 呈訴此意于禮曹 取稟 故命遣史官 收議于大臣"

4) 『經國大典』 刑典 訴冤, "訴冤抑者 京則呈主掌官 外則呈觀察使 猶有冤抑 告司憲府 又有冤抑 則擊申聞鼓 … 陰嗾他人發狀者 罪亦如之 其自己訴冤者 並聽理 誣告者 杖一百流三千里"

5) 한상권, 1996『朝鮮後期 社會와 訴冤制度』, 일조각, 14-16면 참조.

『경국대전』의 규정은 訴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呈訴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조선후기 사회에서는 정소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법제적으로 신분이나 성별에 따른 제약은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여성들은 자신에게 억울한 일이 있거나 국가에 청원할 일이 있을 때 자유롭게 정소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의 정소가 법적으로는 어떠한 제약도 보이지 않는데, 그렇다면 사회적 인식이나 관습에서는 실제 어떠한 상황이었을까? 특히 여성의 외출 및 사회활동이 억제되고 사회적 지위가 하락한 조선후기 여성들도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또는 관청에 청원할 일이 있을 때 제약받지 않고 정소할 수 있었을까?

조선후기 여성들의 정소 활동을 보여주는 자료는 매우 제한적이다. 그런데 일성록에 수록된 정조대 국왕에게 상언 격쟁한 사례들 중에서 매우 주목되는 현상이 보인다. 즉, 총 4,427건(신분 직역이 확인되는 숫자는 3,888건)의 상언 격쟁들 중에는 여성들에 의하여 제기된 상언 격쟁 405건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6)]

이들 여성들은 어떠한 사안으로 국가 통치자에게 상언 격쟁을 하였을까? 그 구체적인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7)]

〈표 1〉 의하면, 1776년(정조 즉위)부터 1800년(정조 24)까지 약 25년 동안 여성들이 상언 격쟁을 통해 국왕에게 청원한 사례는 모두 405건, 한해 평균 16건 정도의 청원이 이루어졌다. 이는 같은 시기 상언 격쟁의 전체 건수인 3,888건의 약 10.4%정도에 해당한다. 청원 활동의 대다수가 남성에 의하여 주도되는 상황 하에서 여성들의 청원 활동이 많지는 않지만 1/10 정도의 비중을

6) 한상권, 앞의 책 참조. 이하의 일성록 통계 수치는 이 논문의 분석 결과에 의거하였음. 위의 405건 가운데에는 婢가 빠져있다. 婢는 奴와 함께 奴婢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노와 비를 구분하지 않아 婢의 수치가 파악되지 않는다. 때문에 여기에서는 부득이하게 婢를 제외하였다.

7) 한상권은 정소 내용을 干恩, 伸寃, 山訟, 立後, 民隱 등 다섯 범주로 분류하였다. 〈干恩〉 : ① 贈諡, 配享, 賜額, 建碑建祠 등 개인의 학행과 공덕을 추앙하는 일. ② 加資, 贈職 등 관직, 관품을 요구하는 일. ③ 棹楔, 旌閭, 褒賞 등 충효열의 삼강오륜을 기리는 일. 〈伸寃〉 : ① 殺獄, 逆獄. ② 國穀偸竊, 僞造文券, 不勤典守. ③ 犯罪綱常, 科場作奸, 凌犯官長. 〈民隱〉 ① 賦稅收奪, 土地侵奪, 商工業利益의 侵奪, ② 奴婢推刷, ③ 徵債濫徵, ④ 非理橫侵, ⑤ 土豪武斷, ⑥ 邑弊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정조대 여성의 상언 격쟁 내용

내용 / 呈訴者	干恩	山訟	伸寃	立後	民隱	합계
氏	7	6	4	87	4	108
召史	6	27	192	11	61	297
합계(A)	13	33	196	98	65	405
비율(%)	3.2	8.1	48.4	24.2	16.1	100
전체(B)	1,703	508	496	419	762	3,888
A/B(%)	0.8	6.5	39.5	23.4	8.5	10.4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되는 현상은 양반 부녀자로 파악되는 '氏'에 의한 정소가 108건인데 비하여, 평민층 부녀자로 분류된 '召史'에 의한 정소가 297건에 달한다는 점이다. 위의 통계 수치는 평민층 부녀자들의 정소 활동이 사족 부녀자들에 비하여 3배 정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법의 혜택과 보호에 상대적으로 더 근접해있으며 문자 생활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권리 확보를 위한 자기주장을 하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족 부녀자들이 평민층 부녀자들보다 정소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였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통계자료는 이러한 통념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국왕에 호소하는 최종단계의 상언 격쟁은 일반 군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呈訴에 비하여 사안이 선별적이고 제한적일 수 있다. 때문에 당시의 일반적인 상황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향촌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차적인 정소 단계에 해당하는 문서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3. 所志에 나타난 여성의 정소활동

일반 백성들이 국가에 呈訴할 때 사용하는 문서는 所志, 上書, 原情, 單子, 白活 등 매우 다양하며, 이들을 통틀어 所志類로 분류된다.

현재 전하는 所志類 자료는 소장처의 성격에 따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개인 집안에서 보관하고 있는 문서와 도서관이나 박물관 등에서 수집 보관하고 있는 문서이다. 개인 집안 소장문서는 원소장처가 분명하며 때문에 문서의 연대파악이 쉽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문서를 현대에까지 장기간 보존할 수 있는 집안은 매우 제한적이며, 대체로 유력 사족가의 후손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 문서의 성격은 하층민보다는 양반 사족층의 상황을 반영하는 측면이 강하다. 도서관이나 박물관 소장 문서는 원소장처에서 문서가 이탈되어 흩어졌다가 다시 한 곳에 모인 경우이다. 때문에 원소장처에 대한 정보가 약하며 연대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여러 곳에서 나온 다양한 종류의 문서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양반 사족층뿐만 아니라 하층민 문서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다양한 계층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고문서를 이용할 때는 다양한 성격의 자료들을 폭넓게 검토하는 것이 당시의 사회 실상을 파악하는 데 보다 근접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소장처에 따른 문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료를 선별하였다. 전자의 경우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간행된 『古文書集成』이다. 『고문서집성』은 원소장처별로 편집되어 현재 76책까지 간행되었는데, 본고에서는 그 가운데에서 정서본과 서원, 향교를 제외하고 개인 가문의 자료집을 대상으로 하였다. 후자의 경우는 서울대 규장각에서 간행된 『古文書』이다. 『고문서』는 문서의 양식에 따라 편집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所志類 문서는 16책에서 26책까지 총 11책에 수록되어 있다.

이 두 자료집에서 확인된 여성 소지는 『고문서집성』에서 24건, 『고문서』에서 102건으로 모두 126건이다. 이들 자료는 현재 전하는 소지류 전체를 포괄하지는 못하겠지만 자료의 성격과 양적인 측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자료집이며 특히 자료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당시의 대체적인 모습을 파악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1) 文書樣式

(1) 『유서필지』의 女人呈訴 양식

소지류를 작성하는 데는 일정한 양식이 있고, 이에 맞추어 정소 내용을 기

록해야 한다.[8] 그런데 조선시대 법전에는 국가에서 사용하는 주요 문서의 양식이 수록되어 있는데도 소지 양식은 보이지 않는다. 법전류에는 주로 국왕 및 관청 문서 위주로 수록되어 있는데, 소지류는 일반 백성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주요 문서였지만 私人文書인 관계로 수록되지 않았다.

때문에 소지류의 양식은 실제 남아있는 문서를 통해서 추정해야 하는데, 18세기 말 19세기 초반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儒胥必知』에 소지류 양식이 수록되어 있어[9] 所志 문서와 비교하면 그 양식을 파악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

『유서필지』 앞부분의 〈凡例〉에는 각종 소지류에 대하여 呈訴者의 신분직역, 처한 상황, 呈訴 내용에 따른 所志 작성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여성의 呈訴에 대한 양식도 '女人 呈訴'라하여 별도로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유서필지』에서는 왜 여성 정소 양식을 별도로 규정하였을까? 『경국대전』 刑典에서는 여성의 訴冤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다. 이는 특별히 남성과 여성의 訴冤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유서필지』에서 여성 정소의 문서양식을 별도로 구분한 것은 남성의 정소 양식과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여성 정소와 남성 정소의 문서 양식상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그 차이가 나타나게 된 원인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먼저 『유서필지』에 근거하여 여성의 정소 양식을 凡民 정소 양식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자.

〈표 2〉를 보면 凡民 정소와 女人 정소는 양식상으로는 동일하다. 차이가 나는 점은 자신의 신분직역을 표기하는 방식인데, 남성일 경우에는 직역과 성명을 밝히지만 여성인 경우에는 '자신의 성씨+召史'로 표기하여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그리고 본문 가운데서 자신을 지칭하는 1인칭을 남성은 '矣身'으로 표기한 반면 여성은 '矣女'로 표기하여 구분하였다.

---

8) 정소 및 소송 절차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가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서는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김경숙, 2004 「16세기 請願書의 처리절차와 議送의 의미」 『고문서연구』24 참조

9) 『유서필지』는 조선후기 일상 생활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각종 문서의 형식, 작성 방법을 정리하고 실제 사례를 소개한 서적이다.

〈표 2〉『儒胥必知』 凡民呈訴와 女人呈訴의 문서양식

凡民呈訴	女人呈訴
某地居閑良某白活 右謹陳所志矣段〈至冤情由事段〉 云云 伏乞參商敎是後 云云 千萬望良爲白只爲 (行下向敎是事) 使道主〈案前主〉 處分 * 自稱曰矣身	某地居某召史〈如金姓人則曰金召史〉白活 右謹陳所志矣段〈至冤情由事段〉 云云 伏乞參商敎是後 云云 千萬望良爲白只爲 (行下向敎是事) 使道主〈案前主〉 處分 * 自稱曰矣女

이러한 차이점은 당시 사회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는데, 여성의 경우 사회활동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는 일은 드물었다. 이는 분재기, 호구단자, 호적, 매매문기 등 현재 남아 전하는 문서들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으며, 족보에도 사위의 이름이 대신 올라갔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관청에 제출하는 공식문서인 所志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정소자가 여성인 때에는 자신의 이름을 직접 밝히지 않고 '성씨+召史'로 표현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모든 여성들이 召史로 칭해졌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戶籍 등의 다른 자료에 의하면, 여성들의 성씨 뒤에 붙이는 칭호는 신분에 따라 명확하게 구별된다. 양반 부녀자들의 경우에는 '氏'를 붙였지만, 중인층 부녀자들의 호칭은 '姓', 평민층 부녀자는 '召史'였으며, 노비인 경우에는 이름을 그대로 기재하였다. 때문에 성씨 뒤에 붙이는 칭호는 여성들의 신분을 구분하는 주요 근거로 사용되고 있었다.

위의 예시에 나오는 召史는 평민층 부녀자들에게 붙이는 칭호이며, 때문에 위의 소지 형식은 평민 부녀자들의 呈訴 양식을 대표한다. 실제로 현재 남아있는 사족 부녀자의 所志에서는 스스로를 召史라 지칭한 경우는 없다.

『유서필지』에 수록된 여성의 정소양식에서는 평민층 여성을 대표로 제시하였으며, 사족층 여성의 정소 양식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정조대 상언격쟁에서 나타난 결과와 마찬가지로 여성 정소가 평민 부녀자들에 의하여 주도되었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은 아닐까? 현재 남아있는 소지류를 통해 상세

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소지의 양식적 특성

본고에서 분석한 126건의 소지류에서 확인되는 여성 정소의 양식은 대체로 『유서필지』에 제시된 양식과 일치하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른 모습을 보인다. 첫째는 소지를 작성하는 문자이고, 둘째는 신분에 따른 칭호와 기재 방식의 차이점이다.

먼저, 소지를 작성한 문자는 『유서필지』에 제시된 여인정소 양식은 한문식인데 반하여, 실제 전하는 소지에서는 한문으로 작성된 문서와 한글로 작성된 문서가 혼재한다. 본고에서 분석한 소지류 126건 가운데 21건이 한글로 작성되어 17% 정도의 비중을 보인다. 남성의 정소인 경우에는 한글 소지가 거의 보이지 않는 점과 비교할 때, 한글로 표기된 諺狀은 여성 정소의 중요한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렇다면 여성들은 소지를 직접 작성하였을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관에 제출하는 소지에는 일정한 형식이 있고 내용을 작성할 때 꼭 써야하는 관용구와 칭호들이 독특하다. 때문에 소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그 방면에 전문적인 소양이 필요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평소에 자주 접하는 투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작성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문자생활에 익숙치 못한 여성들의 경우에는 더욱 강하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조선후기 촌락에는 일반적으로 所志나 특정 문서들을 전담해서 대필해주는 식자층이 있었으며, 또한 다른 사람의 소지를 대신 작성해주고 직업적으로 소송을 대신해 주는 '外知部'의 존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조선후기 여성들도 소지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한문이나 국문을 막론하고 대체로 이들의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사족 부녀자들은 친족 집단의 조언과 지원이 컸을 것이다.

둘째, 신분에 따른 칭호와 기재방식의 문제이다. 『유서필지』에서는 하층민

10) 外知部에 대해서는 박병호, 『近世의 法과 法思想』, 337면 참조. 외지부는 한성부, 형조, 장예원 등 法司 주변에서 존재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방의 治所 주변에도 이와 유사한 성격의 존재들이 있었을 것이다.

부녀자의 칭호에 대해서만 제시되어 있는데, 실제 소지에서는 신분에 따라 자신을 기재하는 방식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유서필지』의 양식과 실제 소지의 한 사례를 비교해 보겠다.

〈표 3〉『儒胥必知』의 女人呈訴와 사족부녀자 所志의 문서양식

『유서필지』의 女人呈訴	사족 부녀자의 소지[11]
某地居 某召史 白活 右謹陳所志矣段 云云 千萬望良爲白只爲(行下向敎是事) 使道主 處分 * 自稱曰矣女	道內面居 故學生辛鼎受 妻 柳氏 右(謹言所)志痛迫情由段 云云 千萬望良爲只爲行下向敎是事 官司 處分 * 自稱曰女矣身

양자의 두드러진 차이는 소지 첫머리에 呈訴者의 신원을 기재하는 부분이다. 柳氏의 경우에는 '거주지+남편의 신분직역+성명+妻+성씨+氏'의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한 반면, 『유서필지』의 '召史'는 '거주지+성씨+召史'라고 표현하였다. 즉, 사족 부녀자는 남편과의 관계를 통하여 자신을 표현하였고, 하층민 부녀자는 남편을 밝히지 않고 직접적으로 자신의 성씨와 칭호만을 기재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일반적이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본고에서 파악한 여성 소지 전체를 대상으로 정소자 기재방식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았다.

〈표4〉에 의하면, 사족 부녀자는 '남성의 신분직역+성명+관계+성씨+氏'의 형태로 기재한 경우가 21건(84%)으로 대다수였는데, 이 때 기준이 되는 남성은 몇몇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남편이었다. 때문에 사족 부녀자는 대부분 '남편의 신분직역+성명+妻+성씨+氏'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앞의 柳氏가 '故 學生 辛鼎受 妻 柳氏'라고 표기한 방식도 이러한 일반적 유형에 따른 것이었다.

11)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서집성』27 -영광 영월신씨편, 소지 17, 33면

〈표 4〉 여성 정소의 정소자 기재 방식

	정소자 기재방식	건수	비율(전체비율)(%)
사족 부녀자	남성신분직역+성명+관계+성씨+氏	21	84.0(16.7)
	성씨+氏	4	16.0(3.2)
평민 부녀자	남성(신분직역)+성명+관계+성씨+召史	10	13.0(7.9)
	남성(신분직역)+성명+관계+성씨+氏	4	5.2(3.2)
	성씨+召史(姓)	59	76.6(46.8)
	이름	1	1.3(0.8)
	성씨	3	3.9(2.4)
노비	婢+이름	14	100.0(11.1)
미상	이름	3	30.0(2.4)
	성씨+氏	7	70.0(5.6)
총 합계		126	(100)

평민 부녀자는 '성씨+召史(姓)'의 형태가 59건(76%)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즉, 『유서필지』에 제시된 양식처럼, 자신의 관계를 밝혀줄 남편을 밝히지 않고 자신에 대한 정보만을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인 투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외에도 호칭은 召史를 칭하면서 기재 방식은 '남성(신분직역)+성명+관계+성씨+召史'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10건(13%) 정도 보이고 있어, 사족 부녀자와 동일한 양식을 썼던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그러나 평민 부녀자의 경우 '남성의 성명+관계' 부분에 정소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물이 기재되는 경향이 강하여, 사족 부녀자와 성격상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즉, 囚獄되어 있는 아들을 구명하는 경우에는 아무개의 어미라는 뜻으로 '아들 성명+母', 남편을 구명하는 경우에는 '남편성명+妻(또는 妾)의 형태로 기재하였다. 때문에 정소 내용과 관련없이 또는 남편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남편 성명+妻+성씨+氏'의 형태로 기재하는 사족 부녀자와는 의미가 다른 것이다. 한편, 노비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호칭을 붙이지 못하고 이름만을 기재하여 '婢+이름'의 형태를 취하였다.

이 밖에도 여성 소지에서는 신분에 따라 자신을 지칭하는 1인칭 용어나 남

편을 지칭하는 용어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1인칭 용어로는 사족 부녀자들은 '女矣身', 평민 부녀자는 '矣女'를 선호하였고, 자신이 과부임을 표현할 때에도 사족부녀자는 '寡婦', 평민 부녀자는 '寡女'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였다.[12] 19세기 후반 이후로는 양쪽 모두 '미망인'을 칭하는 사례가 높아졌다. 그리고 남편을 지칭하는 용어 또한 사족 부녀자는 '家翁', 평민 부녀자는 '矣夫', '家夫'를 칭하는 비중이 높았다. 이러한 용어상의 차이는 신분층에 따라 엄격하게 지켜진 것은 아니었지만 경향성은 강하게 나타났다.

2) 여성 정소의 침체현상과 신분별 차이

이 장에서는 여성 정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분석을 통해서 정소 활동의 상황과 성격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먼저 자료집에 수록된 소지류를 가문별, 주제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도표로 작성하였다.

〈표 5〉 여성 정소의 가문별, 주제별 분포상황

『고문서집성』					『고문서』				
출전[13]	소장가문	전체정소건수[14]	여성정소건수	여성/전체(%)	출전[15]	주제	전체정소건수	여성정소건수	여성/전체(%)
1	안동 광산김씨	125	2	1.6	16-19	산송	1,874	16	0.9
2	부안 부안김씨	103	2	1.9	19	노비	82	1	1.2
3	해남윤씨	97	1	1.0	20-22	토지	1,141	51	1.2
4	파평윤씨	4			22-23	정려, 증직	182		
5	안동 의성김씨	256			23	서원, 사우, 향교	27		
8	광주안씨, 경주김씨	7			23	족보	7		
8	경주김씨	1			23	전결세	220	1	
9	창원황씨	16			23-24	신역, 호역	431	4	0.9
15	안동 풍산유씨	51			24	환곡, 진휼	145		

12) 寡婦는 보통 寡女와 비교되는데, 호적에서 寡婦가 氏 호칭을, 寡女는 姓 또는 召史 호칭을 주로하고 있었으며, 이는 과부와 과녀 사이에 사회적 위상 차이가 분명하게 있었다고 한다.(김경란, 2003 「朝鮮後期 丹城縣戶籍大帳의 女性把握實態硏究」,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87면)

21	영암 남평문씨	56			24	진상, 공물	19		
23	거창 초계정씨	69			24	잡역, 잡세	60	2	3.3
27	영광 영월신씨	189	6	3.2	24	主人權	45		
32	경주 경주손씨	35	1	2.9	24	灌溉, 洑	30		
33	영해 재령이씨1	49			25	가사	11		
35	거제 구조라리	18			25	채무	341	2	0.6
36	용인 해주오씨	48	1	2.1	25	장시	18		
37	구례 문화유씨	69	3	4.3	25	牛馬鷹虎	75		
39	해남 김해김씨	23			25-26	풍속, 토색	104	7	6.7
41	안동 진성이씨	84			26	무고, 옥송	86	18	20.9
43	안동 순흥안씨	21			26	見失物, 도적	8		
44	안동 전주류씨	4			26	受由	30		
45	부여 함양박씨	121			26	任免, 呈辭	18		
47	진주 진양하씨	57			26	기타	195		
49	안동 고성이씨	34							
50	경주 경주최씨	98	2	2.0					
55	제천 연안이씨	11							
56	안동 진주하씨	37	1	2.5					
57	진주 진양하씨	37	1	2.7					
58	안산 진주류씨	21							
60	진주 진양하씨	32	1	3.1					
61	예산 한산이씨	32							
62	경주 경주이씨	94							
64	청양 안동김씨	59							
65	경주 여주이씨 독락당	184	1	0.5					
66	경주 옥산 여주이씨 종댁	91							
67	나주 나주임씨	30							
69	영해 재령이씨2	19							
70	밀양 의령남씨	53	2	3.8					
71	이천 풍천임씨	3							
71	양주 광주정씨	20							
72	남원 삭녕최씨1	69							
75	남원 삭녕최씨2	23							
76	밀양 밀성박씨	46							

합계	2,496	24	0.96	합계	5,149	102	1.98
총계	전체정소 7,645건 여성정소 126건 여성/전체 1.65%						

본고에서 파악한 소지류는 모두 7,645건에 달하는데, 그 가운데 여성 정소는 126건, 1.65%로 극히 낮은 비중을 보인다. 정조대 여성이 국왕에게 청원한 상언, 격쟁 사례가 10.4% 정도였던 점과 비교할 때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사족 후손가에 소장된 소지류에서 비중이 더욱 낮게 나타나 0.96%에 불과하여 원소장처가 해체된 소지류의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이들은 분석 대상이 모두 43개 가문인데 실제로 여성 소지가 소장된 집안은 13개 가문에 불과하고, 대다수 사족 후손가에는 여성소지를 거의 소장하고 있지 않다. 여성 정소의 비중이 극히 낮게 나타난 것은 사족 후손가의 수치가 극히 낮은 데 주요 원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하층민의 소지류가 혼재되어 있는 규장각 소지류 중에는 여성 소지류가 사족후손가와 비교할 때 배에 달하였다.[16]

이는 하층민 부녀자들의 정소활동이 활발하였음을 의미하는데, 정소자를 신분별로 구분해서 비교해보면 이러한 상황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13) 『고문서집성』의 권수를 뜻함. 예를 들면 1은 『고문서집성』1-광산김씨편

14) 안동 광산김씨가(2건), 경주 경주최씨가(2건), 안동 진주하씨가(1건), 진주 진양하씨가(1건), 밀양 의령남씨가(1건)의 경우에는 立案에서도 여성의 정소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였다.

15) 『고문서』의 권수를 뜻함. 예를 들면 16은 『고문서』 16책, 16-19는 『고문서』 16책부터 19책까지를 뜻함.

16) 이러한 사실은 조선시대 고문서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지금까지 고문서 연구는 주로 사족 후손가에 소장된 문서를 대상으로 하였다. 하층민의 경우에는 문서를 후대에까지 남기는 경우가 드문 반면 사족 후손가는 대체로 한 장소에서 수백년을 이어오면서 자료를 보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당시 상황에 보다 근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성격의 자료들이 폭넓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표 6〉 정소자의 신분별 분포

신분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간지	20세기	미상	총 합계
사족 부녀자	2		3	9	6	4		1	25
평민 부녀자		1	1	3	15	51	6		77
노비			2(1)			11(10)		1	14(11)
미상						9	1		10
총 합계	2	1	6	12	21	75	7	2	126

* ( ) 안의 숫자는 婢子가 상전댁의 일로 정소한 경우

〈표 6〉에 의하면, 사족 부녀자의 정소는 25건, 평민 부녀자 77건, 노비 14건 등으로 평민 부녀자의 정소활동이 활발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조선후기 여성의 정소활동은 신분적으로 평민 부녀자들에 의하여 주도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정조대 상언 격쟁에서 나타난 현상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결국 조선후기 여성의 정소활동은 전체의 1~2%로 매우 침체된 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신분층별로는 평민 부녀자들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조선후기 전반적으로 여성정소가 침체되었던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이는 여성 정소가 어떠한 경우에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면 될 것이다. 여성이 정소한 소지에는 대체로 자신이 부녀자로서 정소를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소지 내용에서 정소자의 처지를 추측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소지를 근거로 정소자의 부부 상태를 정리하여 도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정소자의 부부상태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간지	미상	총 합계
과 부	2	1	3	10	7	38	2	63
남편有故				1	6	7		14
남편생존			1					1
남편無關			1	1	8	20		30
합 계	2	1	5	12	21	65	2	108

* 婢子가 상전댁 일로 정소한 11건과 20C 문서 7건을 제외하고 108건을 분석대상으로 함.

정소자의 부부상태는 대체로 다음 4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남편이 사망한 '과부', 둘째, 남편이 생존해 있지만 옥에 갇혀있거나 병석에 누워있어 부인이 어쩔 수 없이 나선 경우인 '남편 有故', 셋째, 남편이 생존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넷째 남편에 대한 정보를 전혀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지가 남편과 전혀 관계없는 '남편 無關'의 경우이다.

그런데 〈표7〉에 의하면 과부가 정소한 경우가 63건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보인다. 남편이 생존해 있는 경우는 15건이지만, 그 중에서 '남편 有故'인 경우가 14건에 이른다. 남편 유고는 남편이 囚獄되어 있어서 남편을 구명하기 위하여 정소한 경우가 대부분임을 고려하면, 부녀자가 불가피하게 정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해되며 이는 과부와 상황이 다를 바가 없다. 때문에 남편이 사망하였거나 남편 유고로 부녀자가 불가피하게 정소한 경우는 전체 108건 중에서 77건이며, 남편과 무관한 경우는 '남편생존'과 '無關' 항목을 합하여 모두 31건이다. 이러한 수치는 조선후기 여성 정소가 주로 남편이 사망한 과부나 남편 有故인 경우에 남편 구명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을 뜻한다.

그렇다면 부부 상태가 정소자의 신분에 따라서는 어떠한 차이를 보일까? 조선후기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의 도표에서 분석대상이 되었던 108건 가운데 15, 16세기 및 미상에 해당하는 5건을 제외하고 103건을 대상으로 부부 상태를 신분별로 구분하여 도표를 작성하였다.

〈표 8〉 조선후기 여성 정소자의 신분별 부부 상태

	사족 부녀자	하층민 부녀자	노비	미상	합계
과 부	19	33		6	58
남편有故	3	10	1		14
남편생존		1			1
남편無關		26	1	3	30
합 계	22	70	2	9	103

〈표8〉을 보면, 과부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계층은 사족 부녀자로 22건 가운데 19건이 과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층민 부녀자의 경우에는 사족부녀자와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과부가 33건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지만 남편유고(10건), 남편생존(1건), 남편무관(26건) 등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특히 남편무관은 남편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경우로 남편과 무관한 정소인데, 과부의 정소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사족 부녀자의 경우 '남편 無關'에 해당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는 점과 비교할 때 주목되는 현상이다.'

여성 정소가 대체로 과부이거나 남편 유고로 나타나는 현상은 조선후기 여성의 사회활동을 억제하였던 사회 분위기가 여성의 법률 활동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지배층에 속하는 사족 부녀자의 경우에서 보다 엄격하게 나타났다. 하층민 부녀자의 경우에는 과부가 높은 비중을 보이면서도 남편 有故, 남편과 무관한 정소 또한 높게 나타나 사대부 부녀자에 비하여 비교적 다양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사족 부녀자들에 비하여 하층민 부녀자들은 상대적으로 사회 이념의 통제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하층민 여성들은 생계 유지를 위하여 생산활동에 종사해야 하는 이들이 많았으며 그들에게 성리학적 이념을 적용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국가에서도 엄격하게 강요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점과 이유는 정소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3) 여성 정소의 내용

각 신분층에 따라 정소 내용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도표를 작성하였다.

조선후기 여성 정소의 내용은 立後, 노비, 토지, 부세, 소송, 옥송, 채무, 풍속 등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다양한 문제들로 나타난다. 그 가운데 소송(42건)과 옥송(19건) 문제가 높은 비중을 보인다.

그런데 신분층에 따라 정소의 내용이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다. 사족 부녀자의 경우에는 입후, 산송에 집중되는 반면, 하층민 부녀자는 정소 내용이 다양하게 분포하며 특히 부세, 소송, 옥송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인다. 산송은 사족층, 하층민 모두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한편, 입후, 노비추쇄, 분재와 관련

된 소송은 사족층에만 나타나고, 부세, 채무, 풍속 등은 하층민에만 나타난다. 이들은 자료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대체로 하층민의 경우에 일상생활 중에 부딪치는 다양한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조선후기 여성의 정소 내용

내용 \ 신분		사족 부녀자	평민 부녀자	노비	미상	총 합계
입후		5				5
노비	노비추쇄	2				2
	노비입안입지		3			3
토지	토지매매 입지	1	3	1		5
	토지문기 입지	1	3		3	7
부세			14			14
소송	산송	7	10		2	19
	분재	3				3
	토지	1	13		4	18
	노비	1		1		2
옥송		1	18			19
채무			2			2
풍속			4			4
총 합계		22	70	2	9	103

신분층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족 부녀자의 정소내용 중에 두드러지는 분야는 立後와 山訟이다. 이 두 문제는 종법 질서가 보편화된 조선후기 사회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가계를 계승할 아들이 없을 경우에 양자를 들이는 입후는 종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산물이었다. 山訟 또한 부계의식이 강화되기 시작하는 16세기 이후로 등장하여 조선후기 사회를 풍미한 부계 친족질서의 특징적인 부산물이었다. 즉, 부계조상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부계조상의 분묘에 대한 인식 또한 강화되고 분묘를 관리하는 노력이 강화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분쟁이 사회문제로 대두하게 된

것이었다. 특히 다른 소송들과 달리 喪中에도 유일하게 제기할 수 있었던 소송이 산송이었다는 점은 산송의 성격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17] 사족 부녀자의 정소 내용이 이들 문제에 집중된다는 사실은 그들의 정소활동이 사회 이념과 질서에 부합되는 한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였음을 뜻한다.

반면, 평민 부녀자의 정소내용 중에서 두드러지는 분야는 부세, 소송, 옥송, 풍속에 관한 내용이다. 부세 문제는 사망한 남편의 부세를 면제해 달라, 부당한 부세 징수를 막아달라, 감당할 수 없는 부세를 면제해 달라는 등의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소송은 산송과 전답송이 비슷한 비중을 보이는데 산송은 투장한 무덤을 파내 달라, 산송으로 가족이 囚獄되어 있으니 放送해 달라는 내용들이 보인다. 이는 사족층과 평민층이 산송에서 주요 대립구도를 이루고 있는 데서 나타난 현상이며, 한편으로는 산송이 사회 전 계층으로 확산되어 가는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토지 소송은 토지 매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자신의 토지를 다른 사람(주로 친척)이 몰래 팔아먹어 억울하다는 내용이 많은데 친정 쪽 토지나 재산을 부당하게 盜賣한 것을 소송하는 사례들이 보인다. 옥송은 남편이나 아들이 소송이나 무고로 인하여 囚獄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放送을 호소하는 내용들이다. 풍속은 이웃과의 다툼, 전남편의 횡포로 가업이 파산할 지경이라는 호소, 생계를 위하여 失節하여 첩이 되었음을 호소하는 내용, 첩으로 들어가기 전의 전남편 소생을 적실 자녀들이 노비로 사환하려는 것을 막아달라는 내용들이 보인다.

하층민의 정소 내용은 생활하는 중에 부딪치는 부세, 소송, 옥송 등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풍속 항목에서는 하층민 여성들이 재혼을 하거나 첩이 되는 상황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이러한 상황들을 당연시하는 모습들에서 그들의 혼인 형태와 정절 의식은 사족 부녀자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4. 조선후기 여성 정소의 실제 모습

이상에서 조선후기 여성의 정소활동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신

17) 김경숙, 2002 「조선후기 산송과 사회갈등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참조.

분층에 따라 정소 양식, 활동 상황, 내용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본 장에서는 사족층 부녀자와 하층민 부녀자의 정소 사례를 통하여 신분층에 따른 정소 내용의 차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1) 사족 부녀자의 정소

18세기 초 영광에 거주한 辛鼎受家와 동성 종족인 辛聖中家 사이에 전개된 山訟은 여성 정소의 대표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는 1709년(숙종 35) 12월 辛鼎受 妻 柳氏가 영광 군수에게 呈訴한 所志가 전해지고 있다.

유씨의 남편 신정수는 전라도 영광에 세거한 영월 신씨가 출신이었다. 그런데 이 집안은 1700년대 초반에 가계계승과 관련하여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유씨의 所志에 의하면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저의 팔자가 기구하여 하늘에 죄를 얻어 남편 형제들이 연달아 요절하여 남편 宗族 중에는 이미 촌수 내의 친족은 없고 아들과 조카 셋만 있는데 또한 모두 幼弱한 바, 날마다 마음속으로 비는 것은 오직 세 아이가 장성하여 家戶를 계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쌓인 악업이 아직 몸에 있어 남은 재앙이 다 없어지지 않아 지난 해 봄과 겨울에 하나 있는 조카가 아들없이 죽었고 제 큰아들마저 혼인도 못하고 요절하여 신씨 집의 血屬은 10살짜리 孤兒 하나 뿐입니다. 사람사는 집에 재앙이 예로부터 무슨 한계가 있겠습니까마는 제 남편집과 같은 경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18]

소지의 내용에 의하면, 남편 辛鼎受와 남편의 형 辛鼎和가 이미 세상을 떠났고, 하나있던 조카와 큰아들도 1708년 봄과 겨울에 연달아 사망하여 10살짜리 둘째아들만이 살아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한 집안에서 가계를 계승해야 할 남성들이 네 사람이나 연달아 사망하는 상황에서, 유씨가 날마다 마음속으

18) 『고문서집성』27- 靈光 寧越辛氏篇, 所志 17, 33면, "大槩矣身賦命崎嶮 獲罪於天 家夫兄弟 相繼夭亡是遣 夫家宗族 旣無寸內之親 而但有子姪三人 亦皆幼弱是乎所 日夜所默禱於心者 惟冀三兒成立 以繼家戶是如乎 積惡在躬 餘禍未艾 去年春冬 獨姪無子而死 伯子未娶而夭是遣 辛家血屬 只是十歲孤兒一人是置 人家禍殃 今古何限 而豈復有如矣夫家者是乎旀"

로 비는 것은 남은 아이들이 장성하여 가계를 계승하는 일이었다면서 가계 계승에 대한 위기의식과 불안감을 표현하였다.

18세기 초반 辛鼎受家는 이처럼 가계가 단절될지도 모를 위기에 직면하여 집안 내의 대소사를 비롯한 모든 일을 이끌어갈 사람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정수 처 유씨는 집안일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위의 소지에서도 나타나듯이 촌수 내의 친척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씨는 신씨가 남성들에게 의지할 수 있는 형편도 못되었다.

유씨는 가계계승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하나 남은 어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두 가지 조처를 취하였다. 첫째는 어린 아들을 수백리 밖으로 멀리 피접을 보내 집안의 재앙이 미치지 못하게 하였고, 둘째는 시부모인 辛慶隆 夫妻의 분묘를 吉地를 찾아 遷葬할 것을 시도하였다. 천장을 결심하고 이장할 곳을 찾던 중 그는 남편 집 10대조모 산소가 영광과 무장 두 고을 사이에 있는데 그 근처에 쓸 만한 빈터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남편의 先山에 자손이 입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집의 私墳들과도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 서로 보이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형세상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였다.[19]

그런데 이장을 곧바로 실행하지 못한 데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즉, 마침 때가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시부모 분묘를 開棺할 수 없었다. 때문에 그곳에 다른 사람이 분묘를 쓰지 못하도록 置標를 해 두고 봄을 기다리기로 하고, 때마침 사망한 큰아들을 그 옆에 먼저 매장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인근에 사는 辛聖中家에서 아들의 入葬을 禁葬하고 나서면서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것이었다.

유씨는 관에 정소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신성중을 찾아가 許葬해 줄 것을 여러차례 호소하였다. 그 과정에서 신씨가 문중에서도 門長이 나서서 양측의 私和를 시도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조선후기 친족 간의 분쟁에서 문중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여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양측의 화해를 시

19) 앞의 책, 소지 17, "適聞夫家十代祖母山所 在於靈茂兩邑之交 而有空地可用之處是如爲去乙 矣身心窃自幸 以□□山之側道□便近 而子孫諸家各葬私墳 前後左右 已成叢塚 則矣身夫家 同是子孫 況此所占 又□先山 又諸家私墳 相距稍間 彼此墳塋各相不見是乎所 視諸已葬諸墳 遠近有間 求之事勢 何獨不葬 定欲改葬舅姑是乎矣"

도하였으며, 관청에서도 이를 권장하였다. 그러나 자체적인 해결 노력과 문중의 조정 과정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유씨는 마지막 선택으로 관청에 정소하여 공식적인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유씨는 소지에서 자신이 부녀자로서 직접 관에 呈訴하여 소송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대강 언문 소장을 갖추어 관에 정소하니, 소장에 있는 사람을 잡아와서 추문하여 처결하라고 판결을 내리시기에, 그날 바로 題辭를 신성중에게 가서 보여주며 訟卞에 나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아 과부집에 소송에 나갈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부모를 遷葬하는 산을 또한 노비 손에 맡겨두어 訟卞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難便한 형세를 헤아리지 않고 직접 訟庭에 들어가려고 官門 밖에 이르러 …[20]

위의 인용문에서 그는 자신이 직접 소송에 나서게 된 것은 불가피 상황 때문임을 강조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첫째는 남자라고는 어린 아이만 있는 과부집에 달리 소송에 나갈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점과 둘째는 노비에게 소송을 맡겨두게 되면 변론을 충분히 할 수 없어 믿을 수 없다는 점이다. 때문에 그는 難便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몸으로) 어쩔 수없이 訟庭에 직접 나서게 되었다는 것이다. 위의 상황에서 우리는 여성 특히 사족 부녀자가 訟庭에 직접 나서는 일은 매우 특수한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시대 사족 부녀자는 관아에서 推問할 일이 있어도 직접 송정에 나오지 못하도록 규제되었다. 세종 대 李淑援의 처 權氏의 송사가 직접적 계기가 되었는데, 세종은 이 사건으로 다음과 같이 명을 내렸다.

> 법관이 양반 부녀자를 公廳에 불러서 취조하거나, 부녀자가 혹 스스로 법정에 나가서 송사에 변명함은 온당치 못하다. … 지금부터 양반 부녀자로서 법정에 자진하여 나오는 자는 일체 금지하며, 법관도 부녀자나 조정 관리를 불러다 취조하

20) 앞의 책, 소지 17, "不得已略具諺狀, 呈訴□…官前是乎則, 狀付人捉來推覈處置亦, 題下敎是去乙, 卽日以題辭往示辛聖中, 使之就卞, 而孤子寡家, 無人□訟瓮不喩, 舅姑改葬之山, 亦不可付諸奴僕之手, 歇後訟卞是乎等以, 矣身不計難便之勢, 欲親入訟庭, 來到 官門外…"

지 말고, 다만 서면으로 핵문하는 것이 옳으니 상정소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21)]

세종대의 조처를 계기로 조선시대 양반 부녀자는 자진하여 송정에 나갈 수도 없었고, 법관이 부를 수도 없게 되었다. 때문에 관청에서는 사족부녀자들에게 公緘을 보내고 부녀자는 이에 대하여 答通을 함으로써 대신하였다. 이는 유교사회에서 지배층 여성들의 외출을 억제하고 婦道를 지키도록 강요하는 일련의 규제들 속에서 취해진 조처였다.

때문에 유씨가 직접 呈訴하고 송정에 나가는 상황은 조선후기 성리학적 분위기가 강한 사회에서 일상적인 모습은 아니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집안의 노비를 통하여 대신하여야 했는데, 유씨는 노비에게 소송을 맡겨놓으면 자신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면서 자신이 직접 나섰다. 때문에 그는 자신이 직접 소송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였던 것이다.

이는 유씨에 국한되는 상황은 아니었으며, 사족 부녀자의 소지에는 일상적으로 등장하는 내용들이다. 조선후기 사족 부녀자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呈訴하는 것이 사회 분위기에서 벗어나는 행위였기 때문에, 여성의 몸으로 呈訴를 할 수밖에 없는 주변 상황과 자신의 처지를 세세하게 설명해야 했던 것이다.

본 소송의 쟁점은, 신성중은 분쟁지가 자신의 私山이며 兒葬을 허용하게 되면 이후의 犯葬을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이었고, 유씨는 모든 자손이 入葬할 수 있는 先山은 私山이 아니라는 점과 이후로 더 이상 犯葬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관에서는 辛聖中과 門長을 불러 심문한 후에 신성중으로부터 '금장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분쟁지를 유씨측에 決給함으로써 소송이 마무리 되었다.

이 소송은 사족 부녀자가 가계가 단절되려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들 중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특히 사족 부녀자가 소송에 나서는 것이 억제되었던 조선사회의 분위기에서 유씨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던 것도 가계 계승과 산송이라는 사회 이념과 질서에 부합하는

21) 『세종실록』권48, 세종 12년 6월 1일 경오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2) 평민 부녀자의 정소

평민 부녀자의 정소 내용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은 부세, 소송, 옥송, 풍속 문제 등 생활에서 부딪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대부분이었다.

1733년 11월 晉州 南面 永縣里에 사는 寡女 姜召史가 진주목사에게 올린 소지는 부세문제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소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저의 남편(女矣家夫) 金鼎泰가 지극히 빈한한 사람으로 금동촌리에 사는 河生員宅의 논 마지기를 매년 병작하였는데, 지난 신해 임자년 두 해에 (논이) 汰卜되어 두 해를 兵營의 山倉에서 환자를 많이 받아왔는데, 田三稅로 移納한 후에 저의 남편이 지난 여름에 기근으로 사망하였습니다. '營의 각 倉 환자는 전답 주인인 하생원댁 戶奴 進金의 이름으로 납부할 일'로 風憲檢督에게 發牌하여 備納할 일을 각별히 분부해 주십시오.[22]

이에 따르면, 강소사의 남편이 하생원댁의 논을 매년 병작하고 있었는데, 신해 임자 두 해에 농사를 망쳐서 兵營의 山倉에서 환자를 받아먹었다. 남편은 환자 대신 田三稅로 하생원댁에 납부하고는 지난 여름에 사망하였는데, 하생원댁에서 그 환자를 갚지 않아 관청에서 강소사에게 환자 납부를 독촉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된다.

강소사는 소지를 올려 하생원댁에 이미 환자를 갚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독촉하는 것은 부당하며 하생원댁에 환자 납부를 요구하도록 풍헌 등에게 분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갚아야 하는 환자의 양은 쌀 6말 6되, 콩 1말 1되, 벼 20말 5되나 되었다. 강소사의 소지를 받은 진주목사는 '풍헌과 집강은 함께 징수하여 납부할 것' 이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 소지는 사족가의 전답을 병작하고 있던 소작농이 관청에서 환자를 받아먹고 갚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관에 호소하는 내용이다. 소작농이 갚은 환자를 田主가 중간에서 가로채고 갚지 않는 데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

22)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서집성』57-진주 진양하씨편, 소지 6, 57면

인다.

1750년 1월 流民 鄭福三의 妻 金召史가 경주부사에게 올린 소지는 자신을 노비로 自賣하면서 이를 공증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김소사는 소지에서 스스로를 노비로 팔 수밖에 없는 절박한 사정을 다음과 같이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다.

> 대흉년을 당하여 資生할 길이 만무하여 노친을 모시고 아이를 이끌고 유랑하려던 때에 갑자기 시부 상을 당하였습니다. … 산비탈에 시부를 草殯하고 집에 돌아와 생각해 보니, 시부 시신은 아직 장례를 치루지 못하였고 어린 아이는 어미를 부르며 배고프다고 칭얼대니 그 심정이 창황하여 차라리 죽어버려 모르는 것이 낫겠지만 그러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린애를 강보에 싸서 治下(경주)로 유리해 왔으나 차마 멀리가지 못한 것은 시부 시신이 초빈 상태로 永葬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이 본래 병을 안고있는 사람인데다 추위에 얼고 굶주려 지병이 재발하여 움직일 수도 없으니 길가에 얼어죽은 시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23]

이에 따르면 金召史는 가난에 흉년을 당하여 생활 근거를 상실하고 유리하는 처지로 시부가 사망하였는데도 永葬하지 못하고 인근 산비탈에 가매장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은 병들어 운신을 못할 지경이었고, 강보에 싸인 어린 아이는 배고프다고 칭얼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소사는 먼 곳으로 유리할 형편도 못되었기 때문에, 결국 자신을 노비로 팔아서 시부를 장례 치루고 남편의 병을 보살피고 아이의 배고픔을 달래주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김소사는 병든 남편을 대신해서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가장의 역할을 짊어지고 있다가 감당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자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노비로 팔아야 했다. 흉년에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여 유랑하고 몰락하는 하층민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경주관에서는 김소사의 소지에 대하여 "官家에서 알아야 할 바가 아니니 임의대로 하여라" 라는 처분을 내렸다. 김소사는 자신을 노비로 사는 사람을 안심시키고 훗날 분쟁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의 공증을 받으려고 하

23)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서집성』65-경주 여주이씨편, 소지 26, 281면

였으나 관에서는 이를 거부한 것이었다. 관의 거부는 공증에 국한되는 문제였지만, 하층민의 몰락과 신분하락이라는 사회 문제에 대하여 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사적인 일로 관여하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정해년 7월 萬宗里에 사는 曺元瑞의 妻가 딸을 구명하기 위하여 관에 제출한 原情 또한 하층민 부녀자들의 열악한 생활 환경과 정절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이 잘 나타나 있다.

> 여식이 잡혀간 일로 외람되이 번거롭게 정소하여 황공하기 이를 데 없으되, 동년배 여자아이들은 아직 시집가지 않은 이들이 허다한데, 이 무슨 박복한 신세로 이런 심한 지경에 이르렀단 말입니까? 아직 젓비린내도 가시지 않았는데 오직 살기 위한 계책만을 도모하여 失節이 죄임을 몰랐으니, 이 때문에 정려를 세우는 자가 적은 것입니다. 만약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빠졌다면 이미 평생을 그르친 것이니 비록 自新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 설령 처를 버린 남편이 와서 정소를 한다해도 이치상으로는 혹 용서하기 어렵겠지만 달려가 남의 첩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천하다고 할 뿐입니다. 훗날의 경계를 위해서는 삼종지도를 잃었지만, 그렇다고 어찌 재혼할 수 없단 말입니까?[24]

정소자인 조원서 처는 소지에서 자신을 '賈女'라고 칭하고 있어 장사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위의 소지는 관가에 붙들려있는 딸을 풀어주어 劉氏 양반가로 돌려보내 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다. 소지 내용으로 보아 조원서 처의 딸이 어린 나이에 혼인하였다가 남편에게 버림받고 친정에 와 있다가 劉氏 양반가에 첩으로 들어간 상황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누군가가 남편이 있는 부녀자가 다른 사람과 다시 재혼한 것은 失節이라고 정소하였는지 관에서 失節의 죄목으로 잡아가 갇혀있는 것이다. 만약 남편이 사망하였다면 재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이 딸의 경우에는 남편이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붙들려 간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원서 처는 딸이 실절한 것은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강조하면서, 이미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당사자인 남편이 와서 정소를 한다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24) 서울대 규장각, 『고문서』26, 私人文書, 所志類, 風俗・討索 78, 33-34면

그는 딸이 수절하지 못하고 재혼하여 실절한 것은 사회적인 비난의 대상은 되겠지만 관가에 잡혀가 처벌을 받을 죄는 아니라면서, 딸을 다시 劉氏 양반가로 돌려보내줄 것을 호소하였다.

조원서 처와 그의 딸의 경우에서 조선후기 하층민 부녀자들의 정절 관념이 매우 현실적인 모습을 보이며, 그들은 성리학적 이념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보다는 생계를 위하여 失節하고 再嫁하는 길을 택하였다. 이들에게는 사회 이념보다는 생계를 유지하는 일이 절실한 문제였던 것이다.

5. 맺음말

이상에서 조선후기 여성의 정소활동을 고문서 자료를 통하여 구체적인 모습을 검토하고 그 특징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조선후기 여성의 정소활동은 전체 정소의 1-2% 정도로 매우 침체된 현상을 보이면서, 이와 동시에 신분층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소지에 정소자를 기재하는 방식에서 사족 부녀자는 '남편의 신분직역+성명+妻+성씨+씨'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남편과의 관계를 통하여 자신을 표현한 반면, 하층민 부녀자는 남편과의 관계는 밝히지 않고 자신에 대한 정보만을 기록하여 '성씨+召史'의 형태를 사용하였다.

정소자는 대체로 과부인 경우가 많은데 특히 사족 부녀자의 경우에 과부가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그들은 소지 내용에 자신이 부녀자의 몸으로 정소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을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반면 하층민 부녀자는 훨씬 적극적인 정소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남편 구명이나 남편과 무관한 정소를 하는 사례도 높게 나타났다. 정소의 내용 또한 사족 부녀자들은 성리학적 이념, 종법 질서에 부합하는 立後, 山訟 등의 내용이 중심인데, 하층민 부녀자들은 賦稅, 訴訟, 獄訟, 風俗 등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조선후기 여성들의 정소 활동이 신분 계층에 따라 다양한 편차를 보이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지배층 부녀자들은 사회 이념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가치관 및 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삶을 살

았다. 때문에 그들의 정소활동 침체와 특정 사안에 집중되는 내용은 체제 이념 및 질서에 순응하고 참여하는 삶의 반영으로 생각된다.

평민 부녀자들은 상대적으로 현실적인 인식을 하였기 때문에, 정절보다는 생계유지를 위하여 재혼이나 첩이 되는 길을 택하고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층민 부녀자들은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했던 생활환경 때문에 일상 생활에서까지 성리학 이념에 부합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았으며 강요되지도 않았던 것이다. 하층민 부녀자는 노동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의 성을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25] 및 5명의 처를 두었던 평민 박의훤의 사례 등은 성리학 질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생활을 하였던 하층민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26] 따라서 하층민 부녀자들은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현실적인 억울함이나 民願을 호소하는 呈訴 활동을 지배층 여성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조선후기 사회는 성리학 이념이 지배하는 사회였지만, 그 영향의 정도는 신분층에 따라 상당한 격차를 지니고 있었으며 그들 각각의 삶은 다양한 모습들을 띠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후기 사회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총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필자: 서울대학교 규장각 선임연구원)

주제어: 呈訴, 사족부녀자, 평민부녀자, 所志, 氏, 召史

투고일(2005.11.7), 심사시작일(2005.11.14), 심사종료일(2005.11.25)

25) 김선경, 2000「조선후기 여성의 성, 감시와 처벌」『역사연구』8, 95-96면 참조.
26) 문숙자, 2000「양인의 혼인과 부부생활」,『조선시대 생활사 2』, 역사비평사, 92-97면 참조.

참 고 문 헌

奎章閣資料叢書 法典篇,『經國大典』, 서울大學校奎章閣, 서울, 1997
『古文書』16~26, 서울大學校奎章閣, 서울, 1998~2003
『古文書集成』1~76, 韓國學中央硏究院, 서울, 1982~2003
『儒胥必知』

박병호, 1974『韓國法制史攷』, 法文社.
최승희, 1989『改正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박 주, 1990『朝鮮時代의 旌表政策』, 일조각,
박병호, 1996『近世의 法과 法思想』, 도서출판 진원.
이순구・한희숙, 1992「조선시대 여성사관련 연구의 현황과 과제」, 수촌박영석 교수화갑기념 한국사학논총.
한상권, 1996『朝鮮後期 社會와 訴冤制度』, 일조각.
정현재, 2000「山陰戶籍을 통해 본 婦女呼稱」『경상사학』15・16합집.
문숙자, 2000「양인의 혼인과 부부생활」『조선시대 생활사 2』, 역사비평사.
김선경, 2000「조선후기 여성의 성, 감시와 처벌」『역사연구』8.
김경숙, 2002「조선후기 山訟과 사회갈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경숙, 2004「16세기 請願書의 처리절차와 議送의 의미」『고문서연구』24.
김경란, 2003「朝鮮後期 丹城縣戶籍大帳의 女性把握實態 硏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건태, 2004「18세기 초혼과 재혼의 사회사 -단성호적을 중심으로」『역사와 현실』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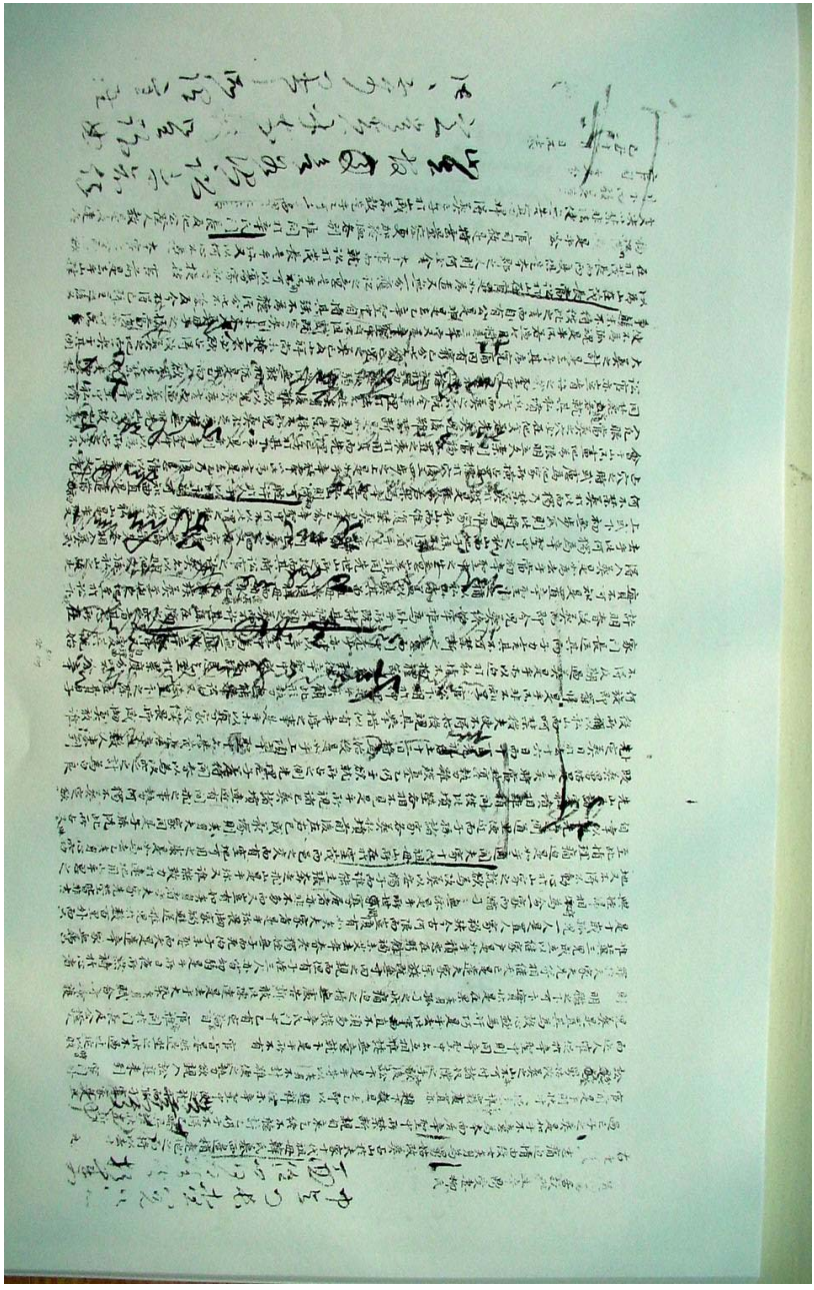

故 學生 辛鼎受 妻 柳氏 所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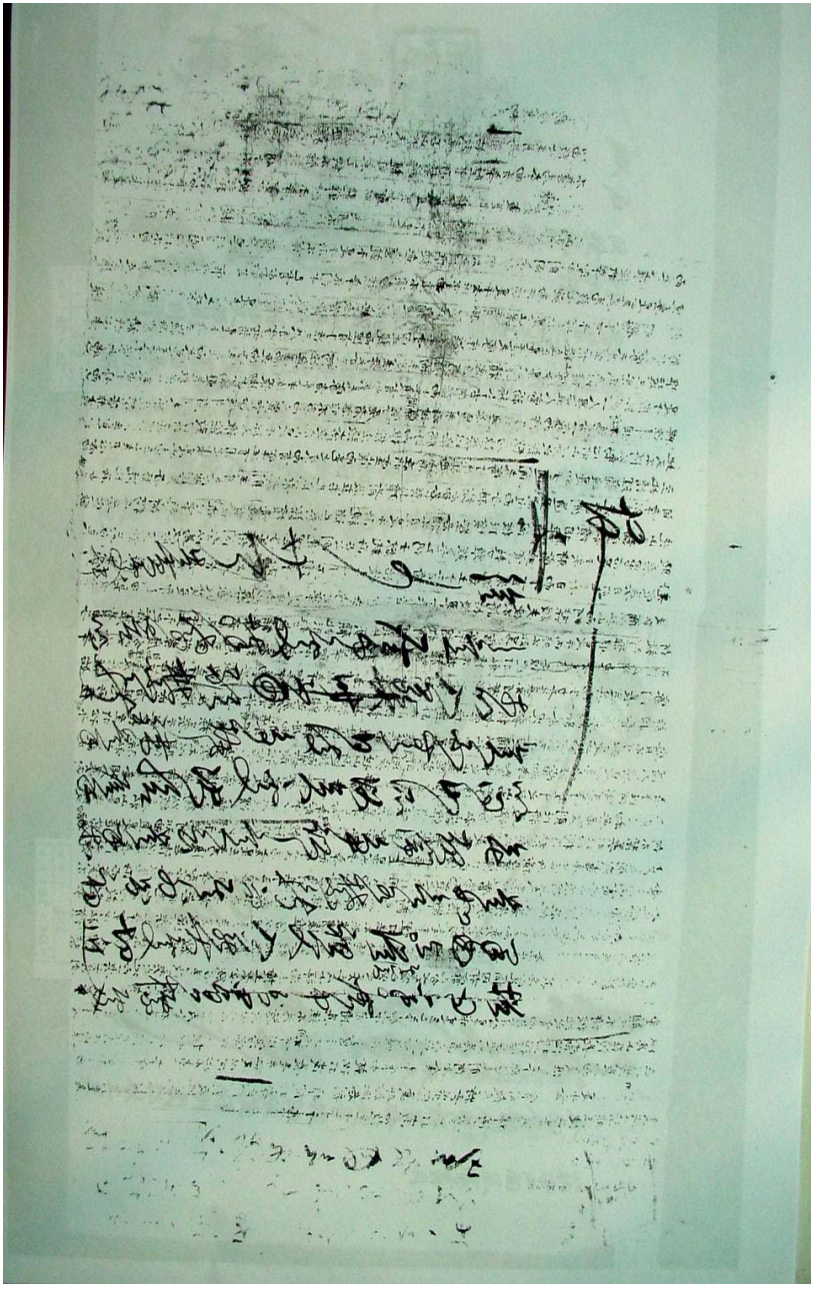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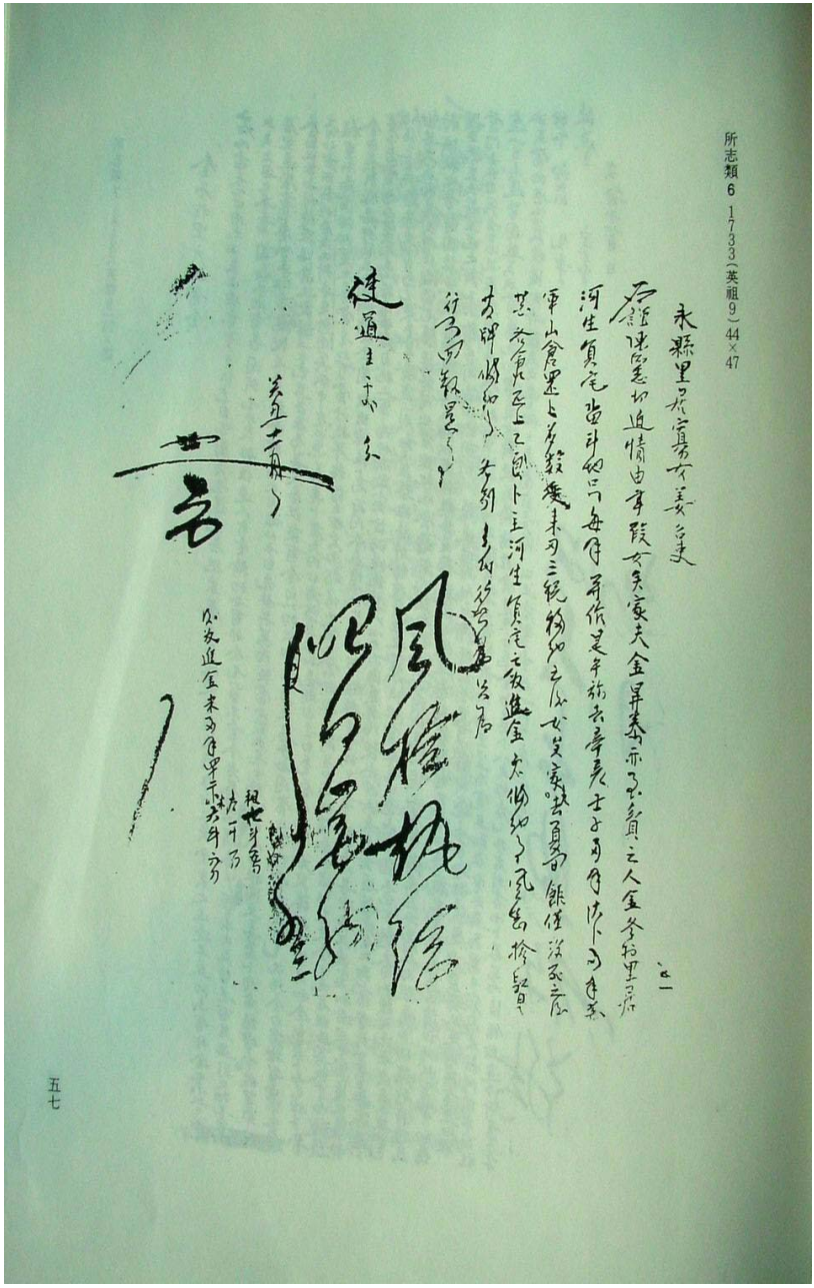

寡女 姜召史 所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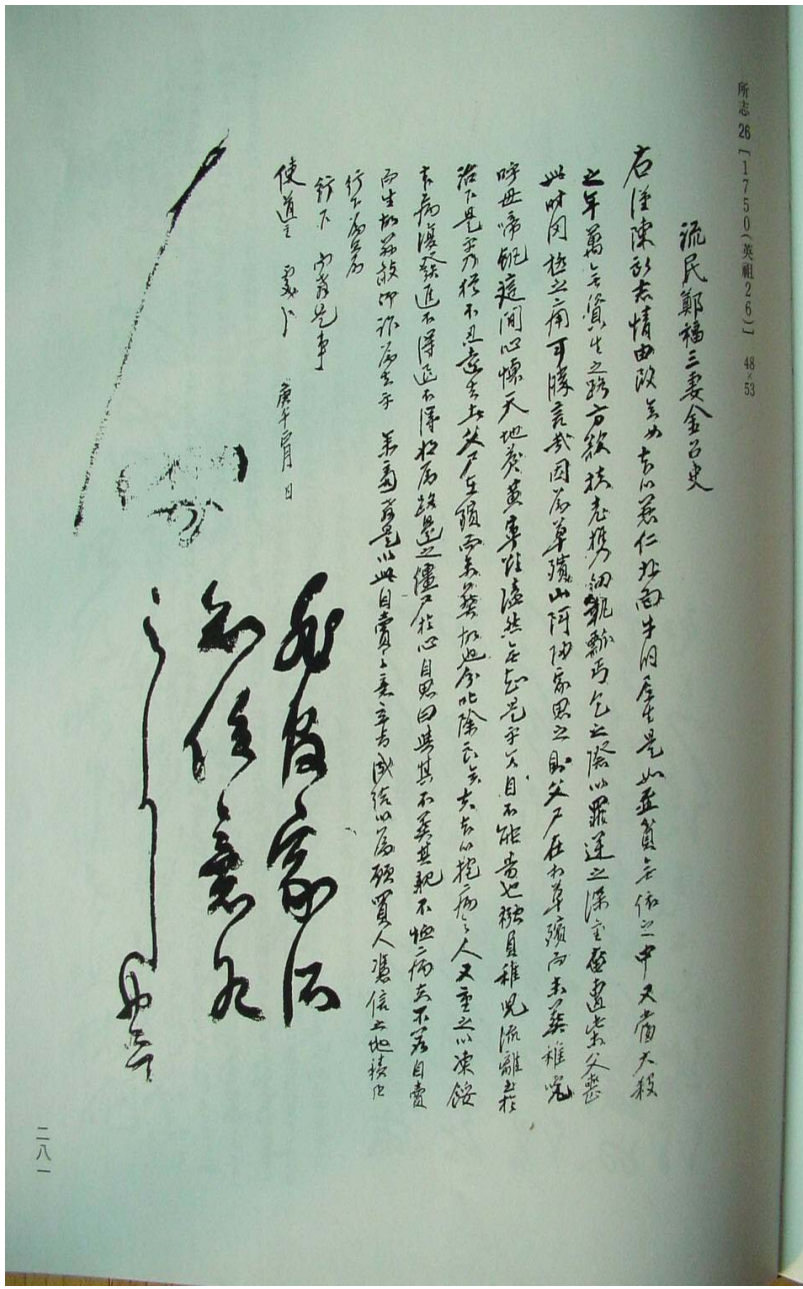

流民 鄭福三 妻 金召史 所志

〈Abstract〉

Females' Presentation of Petitions during the Latter Half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Kim, Gyeong-Sook *

In this article, the petition presentation by the females during the latter half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is examined through age-old documents. Results of the examination show that, due to the social environment of the time which was dominated by the Neo-Confucian ideology and related customs, there were not so many cases in which females presented petitions and appeals, and the ratio between males and females varied considerably among various social classes.

First, in filing an appeal(所志), females from the Scholar-official Houses referred to themselves by first writing their husbands' ranks and occupations, followed by the husbands' names, then the letter 'Cheo/妻', then their own last names, and finally the letter 'Shi/氏'. In essence, they identified themselves in terms of their marital relationships with their husbands. On the other hand, females from the lower social classes referred to themselves by only writing their own last names and a title called 'Sosa/召史', presenting information directly regarding themselves.

In terms of ratio between social classes and the frequency of petition presentations, females from the Scholar-official Houses seem like they were considerably less encouraged to file an appeal or present a petition, and only

* Senior Researcher, Kyujanggak Archives, Seoul National University

widows showed a relatively high percentage of petition presentation. On the other hand, females from lower classes were highly active in presenting petitions, and in many cases they either appealed for the welfare of their husbands(who were in trouble) or for other reasons that not involved their husbands.

The contents of the appeals and petitions also varied, depending on the presenter's social status. Females from the Scholar-official Houses appealed for matters involving establishing successors(立後) or for lawsuits involving the Houses' burial mountains(山訟), which were deemed adequate in terms of adhering to the Neo-Confucian order of the society. On the other hand, females from lower classes appealed for matters that usually happened everyday on a regular bases, such as matters involving taxation(賦稅), lawsuits(訴訟), imprisonment(獄訟) and social customs(風俗).

The Joseon society in its latter half period was a society dominated by Neo-Confucian philosophy, but the power and influence of that philosophy varied due to differences among social classes. In order to account for such various appearances of the philosophical and ideological influences, and achieve understanding of the Joseon dynasty in its latter half period, we shall examine the various aspects of the people's lives and all their social status.

Key Words : age-old documents, Presentation of Petitions, appeals(所志) Neo-Confucian ideology, Cheo/妻, Shi/氏, Sosa/召史, the Scholar-official Houses, females from lower classes